

—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0월 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0월 13일

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 이라는 명칭이 길어 사용자의 불편이 많아 재단 측에서 정관의 재단 명칭을 구미오성문화재단으로 변경 등록(2004.5.4)하여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지금까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명을 앞으로는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로 함으로써 재단명칭 사용을 편리하도록 하고자함.
- 제1조 및 제2조중 “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” 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” 으로 개정하고자 함.

-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중 “진흥재단” 을 “문화재단” 으로 하고 부칙 제2항중 “진흥재단” 을 “문화재단” 으로 개정하고자 함.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
-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“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 의 제명이 길어 사용자의 불편이 많아, 재단 측에서 정관의 재단 명칭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” 으로 변경 등록함에 따라
- 제명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 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